

법인 및 개인의 절세전략(일반 및 상속·증여)

2018.10

신우회계법인

**상무 / 공인회계사 박경연
(010-3343-7993)**

사업자의 종류

구분	사업자의 종류	
사업의 형태	개인사업자(개인명의)	
	법인사업자(법인 등기 +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사업의 규모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과세여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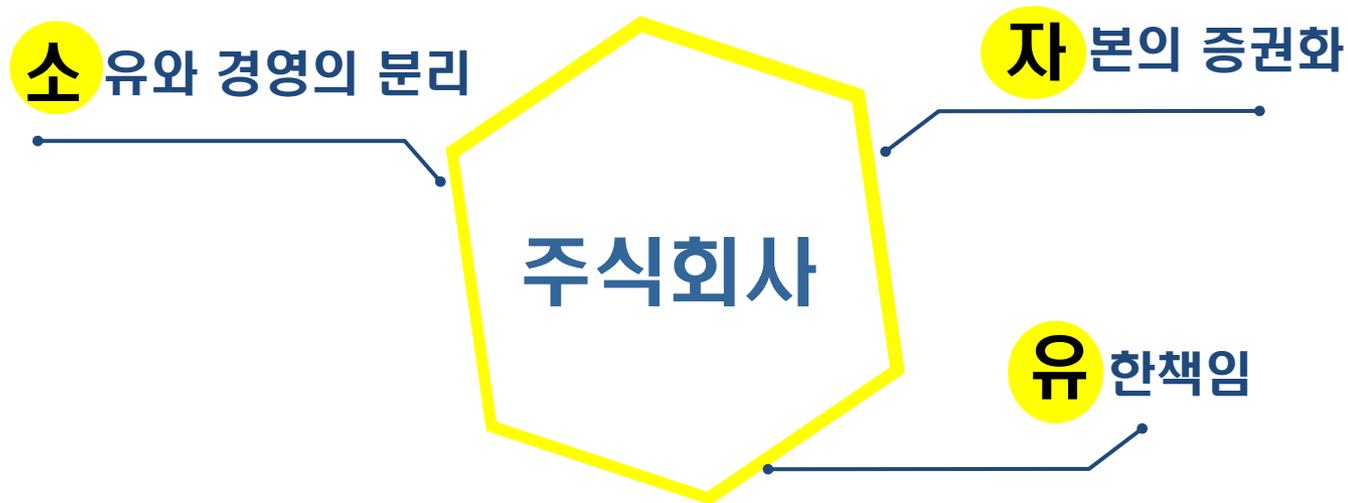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유권	사업자 <u>개인</u> 에게 귀속	소유권인 주식보유자인 <u>주주</u>
소유권과 경영권	일치(소유자와 경영자가 동일)	분리 (소유권은 주주, 경영권은 이사회 즉, 대표이사도 월급쟁이)
수익의 귀속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사용 및 소득세 납부후 잉여금은 전부 개인에게 귀속 <u>사업자(체) 잉여금과 개인재산과의 구분 모호</u>	법인의 소유권은 주주에게 있고 주주는 법인영업비용사용후 남은 재원으로 부채자금을 우선상환하고 남은 자본(잉여금)은 법인이라는 vehicle에 귀속 주주가 법인잉여금을 귀속하려면 별도의 배당 등으로 개인재산화 할 수 있음.
자금조달	사업자의 잉여금 및 개인재산의 구분의 어려움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투명성과 신용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투자금을 확인 및 value를 산정하는 매개물이 없음.	법인vehicle에 재원과 영업결과물을 귀속가능 이를 통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며 이를 지분(주식)이라는 매개물에 의하여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음.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과정
적용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세율	세율 : 6%~43%로 누진 적용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세율 : 10%, 20%, 22% 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배당 또는 급여를 가져갈 경우 배당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 6%~43% 납부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무	수입 금액에 따라 <u>관편장부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u> 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u>복식부기의무자</u>
외부감사제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부채 7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의무외부감사를 받음

창업의 방법 및 주식회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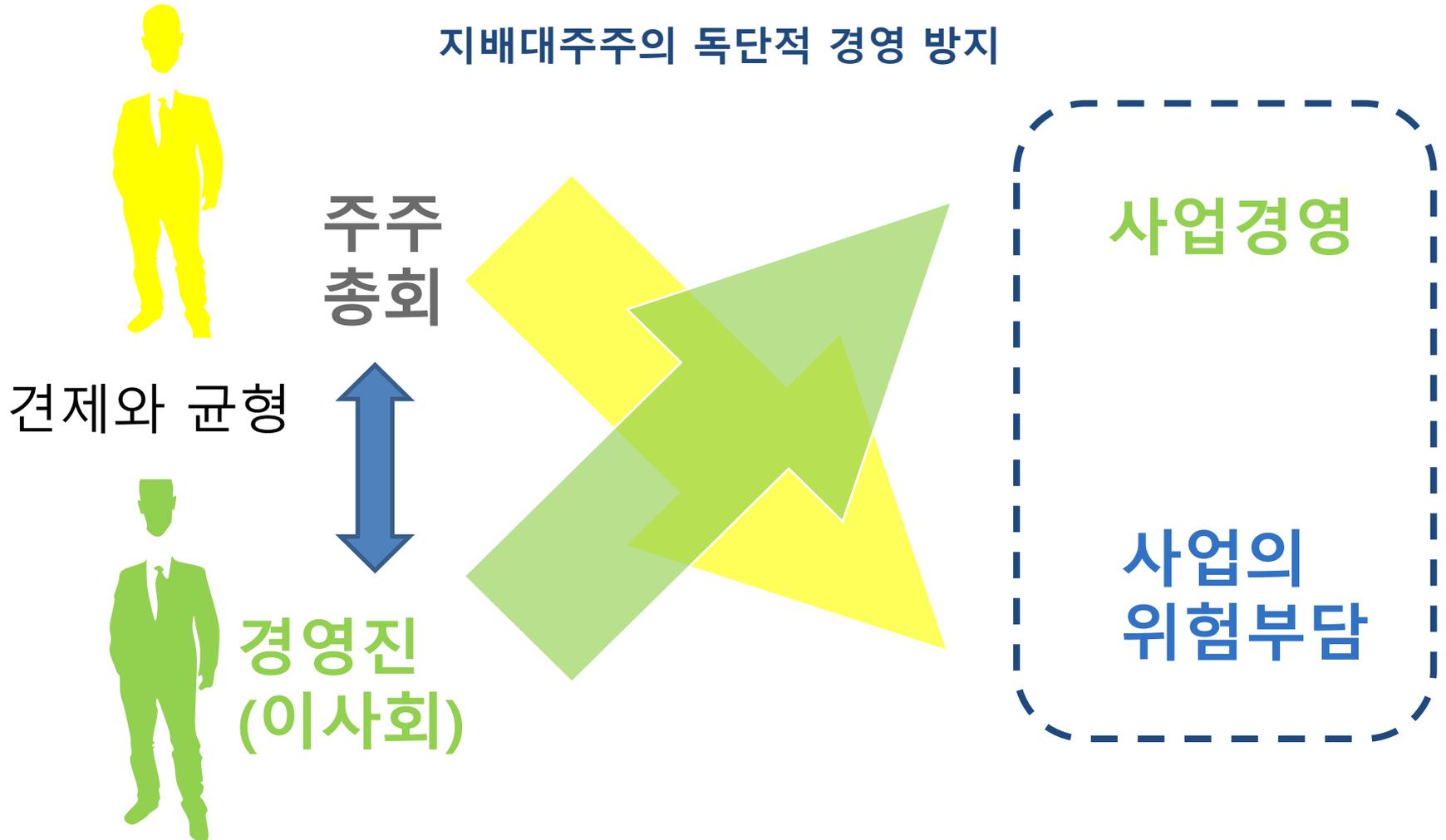
1. 창업방법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

경영측면, 관리측면, TAX측면, 자금조달측면

2. 주식회사(법인)의 특징(장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유한책임 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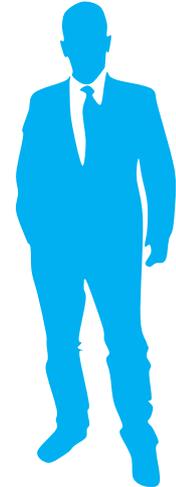
주주의
책임

1) 자본금 내
유한책임

2) 대주주(50%초
과) 책임

- 국세2차납세의무
- 법인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배임, 횡령
분식, 등
형사적 책임
외 법적책임
없음.



경영자의
책임

특수관계자포함 대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법인 보유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주의필요

(자본금의)증자

▶ 주식 발행을 통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 유상증자

▶ 무상증자/주식배당 ?????

▶ 기존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 무상증자
기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 주식배당

- 회사에 자금유입 없이 기존의 주식발행초과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 대체함으로써 상장 등 자본금 증가가 필요할 때 활용
- 무상증자의 경우 세금이 없으나 주식배당의 경우 세금폭탄이 될 수 있음.
- 배당의 종류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음.
- 현금배당은 현금을 배당받으므로 세금내는 것이 용인되나 주식배당의 경우 단순히 주식수만 증가하는 절차임에도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함!!!!!!

(자본금의)증자

▶ 주식 발행을 통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  유상증자

▶ 무상증자/주식배당 ?????

▶ 기존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 무상증자
기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 주식배당

- 회사에 자금유입 없이 기존의 주식발행초과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자본금 대체함으로써 상장 등 자본금 증가가 필요할 때 활용
- 무상증자의 경우 세금이 없으나 주식배당의 경우 세금폭탄이 될 수 있음.
- 배당의 종류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음.
- 현금배당은 현금을 배당받으므로 세금내는 것이 용인되나 주식배당의 경우 단순히 주식수만 증가하는 절차임에도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함!!!!!!

투자배수의 결정

4억원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분율 결정 및 배수산정

투자시 자본금	0.5억원	1억원	2억원	5억원
기업가치의 결정	20억원 (투자자의 기업가치평가와 회사의 기업가치평가의 협상)			
5억 유치를 위하여 지급할 지분	= 4억/20억 ⇒ 20% 지분율 (자본금 및 배수와 상관없이 동일)			
투자배수의 결정	=20억/0.5억 40배수	=20억/1억 20배수	=20억/2억 10배수	=20억/5억 4배수

투자유치 사례

엔젤투자유치 4억원을 위하여 기업가치 합의 20억원(지분율 20%)

❖ 투자전

주주	주식수	액면가	자본금	지분율
박경연	10,000	5000	50,000,000	100%

주당발행가 = 4억원/2,500주 = 160,000원

❖ 투자후

주주	주식수	액면가	자본금	주발초	지분율
박경연	10,000	5,000	50,000,000	-	80%
엔젤투자자	2,500	5,000	12,500,000	387,500,000	20%
	12,500		62,500,000	387,500,000	100%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주요 TAX

◆ 제반 세금의 신고 및 납부기한

구 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 가치세	법 인 사 업 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 1 ~ 4. 25 7. 1 ~ 7. 25 10. 1 ~ 10. 25 1. 1 ~ 1. 25	1사분기(1. 1 ~ 3. 31)의 사업실적 2사분기(4. 1 ~ 6. 30)의 사업실적 3사분기(7. 1 ~ 9. 30)의 사업실적 4사분기(10. 1 ~ 12. 31)의 사업실적
	개 인 사 업 자 (일반)	1기 확정 2기확정	7. 1 ~ 7. 25 1. 1 ~ 1. 25	상반기(1. 1 ~ 6. 30)의 사업실적 하반기(7. 1 ~ 12. 31)의 사업실적
		-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 간이과세자 신고 납부기한(1.1~1.25), 예정고지납부(7월)		
법인세	법 인 사 업 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1. 1 ~ 3. 31(3개월)	1년간 (1. 1 ~ 12. 31)의 연간 소득금액(영업수익, 토지양도소득, 청산소득)
		중간예납	7. 1 ~ 8. 30(2개월)	중간예납 기준액의 ½ 1. 전기법인세의 ½ 2. 당기반기가결산으로 하여 법인세 계산후 납부 택일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면세사업자	다음해 1. 1 ~ 2.10		1. 1 ~ 12. 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 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 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자가 반기 납부 가능
		반기납부자	7.10 / 1.10	

법인 관련 주요 TAX

부가가치세 세부

◆ 신고·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예정/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중간예납	확정 신고대상	예정 및 확정 신고 납부기간
법인사업자	제1기 1.1.~3.30.	1.1.~6.30. 간의 사업실적	4.1~4.25 / 7.1.~7.25.
	제2기 7.1.~9.30	7.1.~12.31. 간의 사업실적	10.1~10.25 / 다음해 1.1.~1.25.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 개인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확정신고 하면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부가가치세』를 참조
- **법인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납부세액} = \text{매출세액 (매출액} \times 10\%) - \text{매입세액 (매입액} \times 10\%)$$

부가가치세 안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 법인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과 제조업에만 적용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 ~ 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매출누락 시 세금 부과

실수로 또는 고의로 매출누락시 세금폭탄!!!!

- ▶ 매출 부가가치세 10% + 가산세 20% + 이자상당액
- ▶ 매출누락에 다른 수익 누락 법인세 22% + 가산세 20% + 이자상당액
- ▶ 매출누락에 따른 자금은 대표이사가 가져간 가지급금으로 봄으로 대표이사 급여소득세 (6%~43%) + 가산세 20% + 이자상당액

매출누락은 대부분 매입회사와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므로 세무서에서 쉽게 Cross check 가능
절대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법인 관련 주요 TAX

퇴직급여 관련 TAX 이슈

-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1년단위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퇴직급여를 통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비용 불인정)

둘째, 퇴직연금제도 가입 -> 퇴직금 상당액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비용 인정)

개인들의 경우 퇴직금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반면 회사는 별도의 자금부담이 있음.

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직원명의로 퇴직연금계좌)
2. 퇴직연금 확정급여형(법인계좌에 예치하되 운영자금 사용 불가능함), 운용에 대한 손익을 회사가 부담 (평가손익 인식)하며 실제퇴직시 법적 퇴직금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함.)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정관 또는 주총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가능하며 2011년 이후 3배수까지 지급가능하나, 중간정산 불가능, 다만,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간정산가능(3배수 초과 가능하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급여처리)

법인 관련 주요 TAX

법인자동차 구입관련 TAX 이슈

- 법인차량구입비 : 2016년부터 법인차량에 대한 과세강화로 법인차량 구입시 TAX 이슈 검토 필요
- 법인차량의 비용인정 요건
임직원이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누구나 보험 또는 부부한정 보험 안됨)
- 비용인정 범위
 - 차량일지 작성을 통해 **개인적사용분과 업무용 사용분 비율에** 따라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중 **개인적 사용분은 전액 비용불인정**(법인세 납부 및 해당임직원 급여로 근로소득 과세)
 - 구입비용(업무용) : 현금구입시 감가상각비, 리스료, 장기렌탈료 등이 연간 800만원까지 비과세 (5년 기준으로 볼때 구입비용 4,000만원 차량까지만 인정)
 - 유지비용(업무용) : 주유비, 차량 정비비용, 보험료 등 유지비용은 연간 200만원 무조건 비과세 단, 추가발생유지비용은 차량일지 작성하여 추가유지비용*업무용운행거리/전체운행거리 부분만큼 비용 인정
- TAX 이슈
 - 구입비용과 유지비용 초과지출금액은 법인비용 불인정으로 법인세 납부
 - 또한, 해당금액은 대표이사의 급여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시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납부
 - 따라서, 구입비용에 대한 조정 및 차량일지를 작성하여 유지비용을 추가로 비용인정 받도록 관리할 필요

법인 관련 주요 TAX

직원 급여시 비과세 항목

◆ 직원 급여반영시 급여구분만으로도 비과세 가능한 항목(직원에게 유리)

- 식대 : 직원식대는 10만원만 비과세가능, 현물식사제공과 현금비과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10만원은 과세되며, 휴일 및 야근 등에 제공하는 식대는 비과세되며 비용인정됨.
- 자가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능하나,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 근로자(임원, 직원)여야 하며,
 - 둘째, 근로자명의로 차량이어야 하며(부부공동명의 가능),
 - 셋째, 종업원이 직접운전해야 하며,
 - 넷째,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영업부, 은행담당직원 등 시내출장이 잦은 임직원은 무조건 가능)
 - 다섯째, 시내출장비는 지급하면 안됨(시외출장비는 지급가능함)
- 휴대폰 보조금 :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며 정액이 아닌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지급하면 비과세 인정 가능
- 출산 및 보육수당(6세이하 자년)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월 100만원까지, 다만, 원양어선, 건설현장, 선박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
- 연구활동비 및 연구보조비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원 급여

법인 관련 주요 TAX

직원 급여시 비과세 항목

- 회사소유의 사택을 직원(임원은 근로소득)에게 사용케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금의 전부 대여나 일부대여 등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 장거리 출퇴근 근로자에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급여과세대상임
- 설이나 명절 선물 및 격려금 : 원칙적으로 금전, 상품권 등은 모두 근로소득이 과세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 선물의 경우 비용 인정
- 직원 교육훈련비 : 외부강사초빙하여 지급하는 교육훈련비는 전액 회사 비용 인정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학원 등 교육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은 비과세,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근로소득세 과세
- 직원경조사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락되는 비용은 근로소득 비과세 및 법인 비용 인정
생일 및 출산축하금 : 10만원, 결혼축의금, 조의금 : 20만원 증빙없이 일시와 장소, 금액 등 지출결의서
- 건강검진비 및 직원병원비 등 전직원이 차별없이 이루어지는 복리후생규정은 근로소득 비과세가
가능하나 차별이 있는 지원은 과세

법인 관련 주요 TAX

법적증빙의 구분

◆ 법적증빙과 비법적증빙의 구분

구분	법적증빙	비법적증빙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과세) - 계산서(면세)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영수증 - 직불카드 영수증 - 선불카드 영수증 - 지로용지 - 부득이한 경우 임직원 신용카드 가능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송금영수증 계산서(과세사업자)
비용처리 여부	비용처리 가능	비용처리 불가능

- ▶ 예외) 경조사비(경조사비 대장 마련 필요), 정액 출장비(출장비 규정이 있는 경우)
1만원 미만의 지출은 간이영수증 가능

가지급금 해결방안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 (1) 영업자금 용도로 회사로부터 가져갔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 (2)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회사의 자금을 가져가고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 (3) 부정확한 결산으로 인해 있어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 (4)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인한 이익 과대계상

가지급금 해결방안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 (1)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이기에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에 대해 연 6.9%(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6.9%보다 낮을 수 있음)의 이자를 다음 연도까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다음 연도에 입금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함. 통상 대표이사는 높은 급여로 인하여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바,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가급적 매년 이자는 회사에 납부하는 형식이 좋으며, 납부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추가하는 방법은 피해야 함
- (2)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자비용 중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3)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 불인정
- (4)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인한 법인세 추가 납부

가지급금 해결방안

가지급금 해결 방안

- (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임원 퇴직금을 받아 가지급금 상환(세무상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주의 필요)
- (2)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자기주식 매입)
- (3) 대표이사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회사가 매입하고 이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 산업 재산권의 시가는 변리사가 평가해서 보고서를 발행해주며, 평가 방법은 산업재산권으로 벌어들일 미래 소득을 추정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함
- (4) 금융소득합산과세가 배제되는 2,000만원까지 배당
- (5) 급여를 통한 가지급금 상환(근로소득세 부담이 너무 큼)
- (6)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한 대표이사와 회사간 특허매매거래계약 체결을 통한 특허권 매입

부동산 관련 세제 요약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양도일 기준)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 지역 2년 거주) + 9억원까지 비과세

☞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취득했을 때 **3년** 이내에 양도
2.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을 갖는 경우.
기존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상속된 집을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하므로 비과세. 다만, 상속된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음.
3.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을 갖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
4. 부모님 봉양을 위해 2주택을 갖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해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부모님 집과 본인의 집을 합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10년** 이내 매각시 적용

부동산 매매시 재산세(과세기준일 6월 30일) 절세전략
: 잔금지급일 결정에 주의!!!!

상속 제도의 의의

재산상 권리의무 또는 지위를 사망 후에 법률 또는 본인의 최종 의사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것.



세대간 부의 이전 과정

균분공동상속원칙

유언상속우선원칙

유류분 제도

상속인간의 형평성 조정



죽은 자의 재산을 특정관계자가 배타적으로 취득 / 유족생활보장

법정 상속과 유언상속의 비교

	유언상속	법정상속
적용	우선 적용	보충적용(유언X)
상속인	친족이외 제3와 법인, 태아 포함	친족, 태아 포함
방식	법률상 5가지 방식	방식필요 X
유류분	적용됨	적용 X
집행	유언집행자	상속인
대습상속	인정안됨 (단, 보충 수유자를 지정할 수 있음)	인정됨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상속을 적용

유언에 관한 원칙

유언내용의 제한

- ◆ 유증
- ◆ 재단법인의 설립
- ◆ 신탁
- ◆ 인지
- ◆ 친생부인
- ◆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지정 or 위탁
- ◆ 상속재산분할금지
- ◆ 유언집행자의 지정 or 위탁
- ◆ 후견인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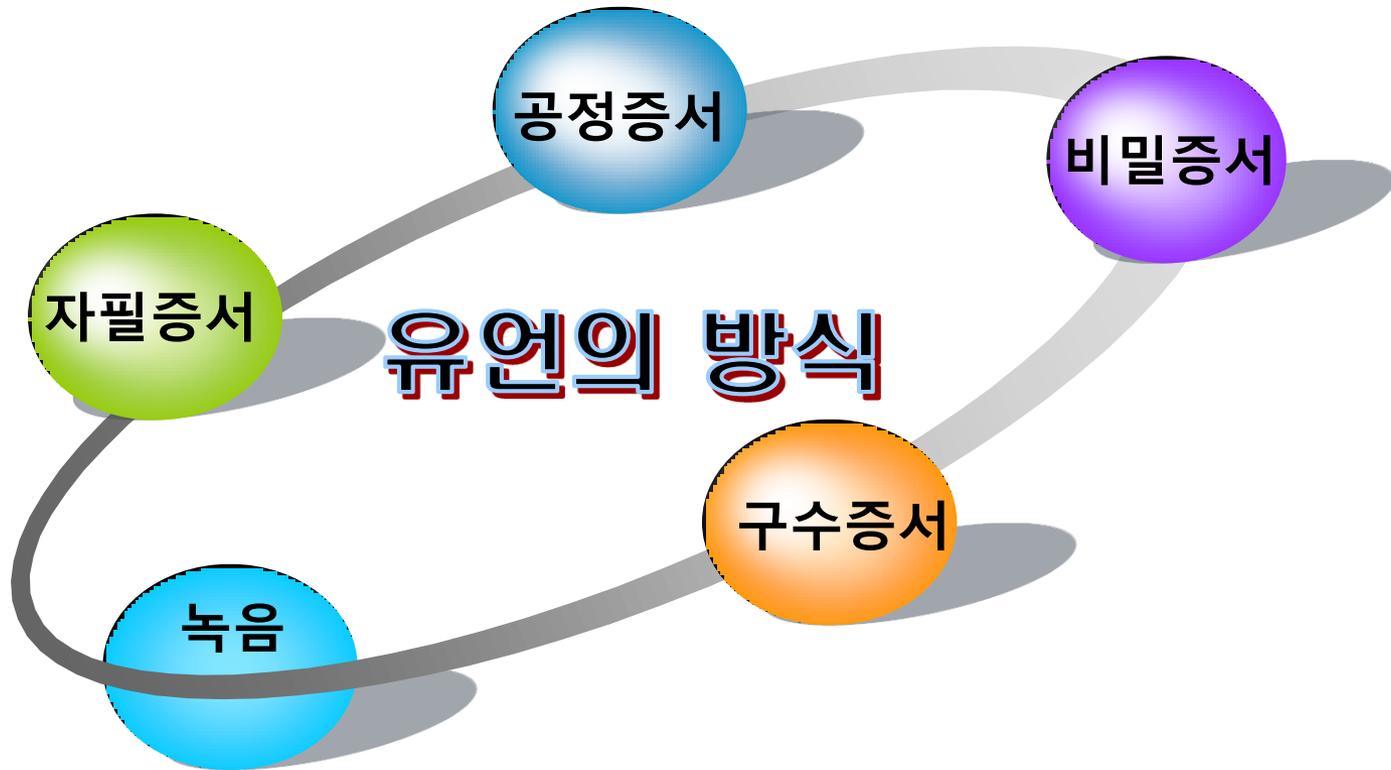
Quiz.

재산 100억을 줄테니 어머니께
효도하고 형님 말씀 잘 들어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이외는 법적 효력 X

유언에 관한 원칙

유언방식의 제한



정확한 유언 확인과 유언의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엄격한 방식 적용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제 1순위 : 직계비속 and 배우자

제 2순위 : 직계존속 and 배우자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



상속재산의 분배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법적 상속분에 의해 분배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균등하게 배분
어떤 차별도 없음.

동순위상속인들의 상속분

직계존비속 상속분의
50% 가산

배우자의 상속분



상속비율 1 : 1 : 1.5

자식 : 7억 X 1/3.5 = 2억 씩 상속
배우자 : 7억 X 1.5/3.5 = 3억 상속

특별수익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시 유증을 받은 경우 이러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함.

**특별수익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상속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특별수익자에 대한 이중상속 문제)**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 받을 재산에
서 차감함.
(미리 받은 만큼 덜 받아라!)**

Ex)

“아버지!
사업하는데 창업자금이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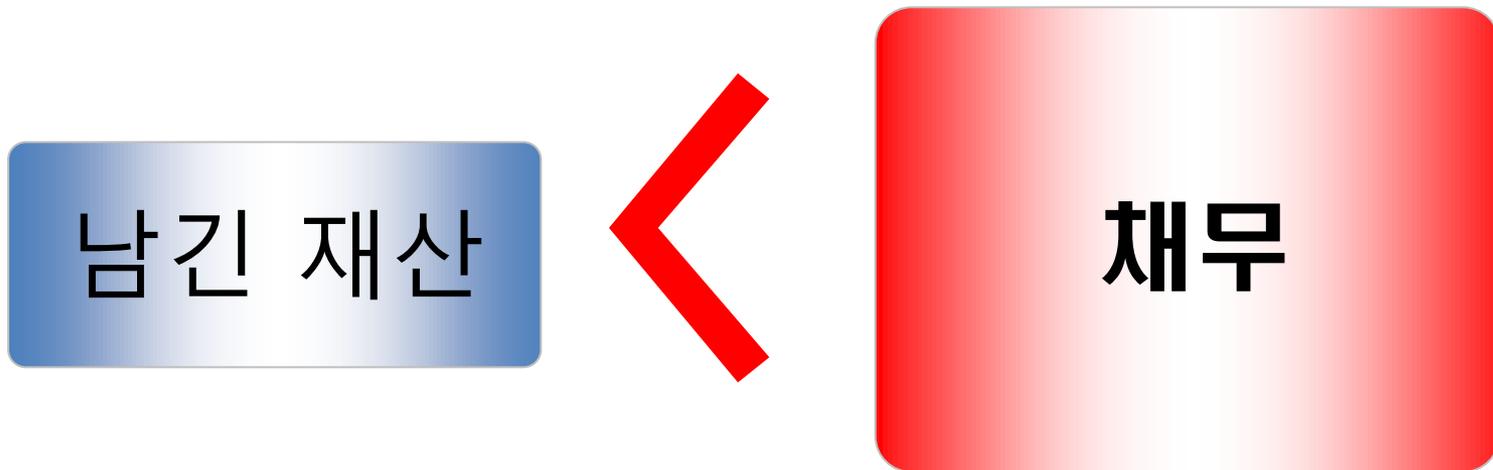
“내가 돈이 어딴냐 이녀석아”

“아버지 퇴직금 받으신거 있잖아요T”

“ 어디까지나 빌려 주는거다.
값아야 한다...TT ”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현금, 부동산, 채권 등)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채무, 재산적 의무 등) 까지 상속됨.



상속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발생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여
하여 상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상속의 승인과 포기



단순승인

- ▶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의 승계
EX) 재산 그대로 주세요. 빚은 제가 갚을게요.



상속포기

- ▶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
→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선택권이 넘어감.



한정승인

- ▶ 승계받은 재산만큼 빚을 청산하고, 남은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상속방법
EX) 받은 만큼 갚겠습니다. 더 이상은 전 몰라요

유류분 제도

상속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타인이나 단체에 재산을 줄 수 있음

- 유족의 삶을 저해하는 요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단,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유족의 생활보장적 법정상속분을
유류분으로 인정하여
유언의 자유 제한

**∴ 유언을 할 때도
유류분을 고려!!**

유류분 제도

상속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타인이나 단체에 재산을 줄 수 있음

- 유족의 삶을 저해하는 요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단,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유족의 생활보장적 법정상속분을
유류분으로 인정하여
유언의 자유 제한

**∴ 유언을 할 때도
유류분을 고려!!**

유류분 사례



법적 배우자

피상속인
상속재산 70억

내연녀



아들

내연녀에게
60억 유증

법정 유류분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차액 만큼 청구 !!

법적 배우자인 신애리의 법적 유류분은 얼마이며, 내연녀 민소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인가?

상속비율 → 법적 배우자 1.5 : 아들 1

신애리의 법정 상속분
: 70억 X 1.5/2.5 = 42억

신애리의 법정 유류분
: 42억 X 1/2 = 21억

실제 상속분
(70억 - 60억) X 1.5/2.5 = 6억

민소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21억 - 6억 = 15억



사전 증여 절세전략



사후 상속세 절세전략



사전 증여 절세전략

배우자&가족에게 최대한 사전 증여

현금보다 부동산이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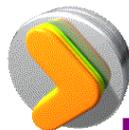
향후 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부터

저평가 시점을 노려라.

법인 창업시 설립자본금 납입시 증여를 통해 배우자
및 자녀지분 확보

사전 증여 절세전략

배우자&가족에게 최대한 사전 증여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직계존/비속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미성년의 경우 3000만

사전 증여 절세전략

현금보다 부동산이 유리?



최근 6개월간 거래가액(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적용

기준시가 :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시가 > 기준시가

사전 증여 절세전략

향후 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부터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소급해서 적용됨.

Ex) 증여 당시 1억 토지 증여 후
9년 후 현재시가 5억이 되고, 수증자가
사망하여도 상속재산은 5억이 아닌
1억으로 편입됨.

사전 증여 절세 전략

저평가 시점을 노려라.



경기침체기에는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 저평가 됨.

경기 불황

실제 회사의 가치 > 주식의 가치

사후 상속세 절세전략

배우자공제한도만큼 배우자에게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양도금지

세금이 있건 없건 신고하세요.

상속재산이 현저히 하락시 경정청구

사후 상속세 절세전략

배우자공제한도만큼 배우자에게 상속



배우자공제 최소5억 ~ 최대30억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초과해 공제를 위해 공제액에 해당하는 만큼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음

☞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Min(A 와 B 중)

A : 30억원

B : 배우자법정상속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자녀 상속분 최소화하고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 유리!!!

사후 상속세 절세전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양도금지



기준시가 적용되었을 경우

6개월 이내 양도시 매매가액 적용

매매가액으로 다시 상속세 재평가

재평가 상속세 > 기존 상속세

돌아가신 후 6개월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

사후 상속세 절세전략

세금이 있건 없건 신고하세요.



상속세 신고만 하면

신고세액공제 10% 적용



세금이 없어도 부동산의 경우

취등록세 과세/비과세 여부 판단

사후 상속세 절세전략

상속재산이 현저히 하락시 경정청구



상속 후 6 개월 이내 본인의 과실없이

상속재산이 하락시

ex) 물려 받은 토지가 그린벨트로 지정

“이봐 공무원 양반
내 재산 반토막 났어
다시 한번 봐줘바”

사후 상속세 절세전략

상속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과세표준

일괄상속재산 공제 (누구든지 0)

→ 배우자 있을 시 최소 10억 공제
배우자 없을 시 최소 5억 공제



절세전략



상속세 = 부자세

최소 10억 이상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

상속세 = 바보세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내는 세금



부자들에게는 절세대책이 필수!!

우리는 부자들을 공략하라!!

Remind

유언상속 Vs 법정 상속 순위는 **유언상속**이 우선한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자격 나이 **만 17세, 의사능력 필요**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낙태를 하면 상속에서 **제외된다**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할**을 더 받는다.

특별수익은 **먼저 받고 덜 받고 기여분은 주고 더 받고**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하세요.

Remind

배우자 증여는 10년에 6억까지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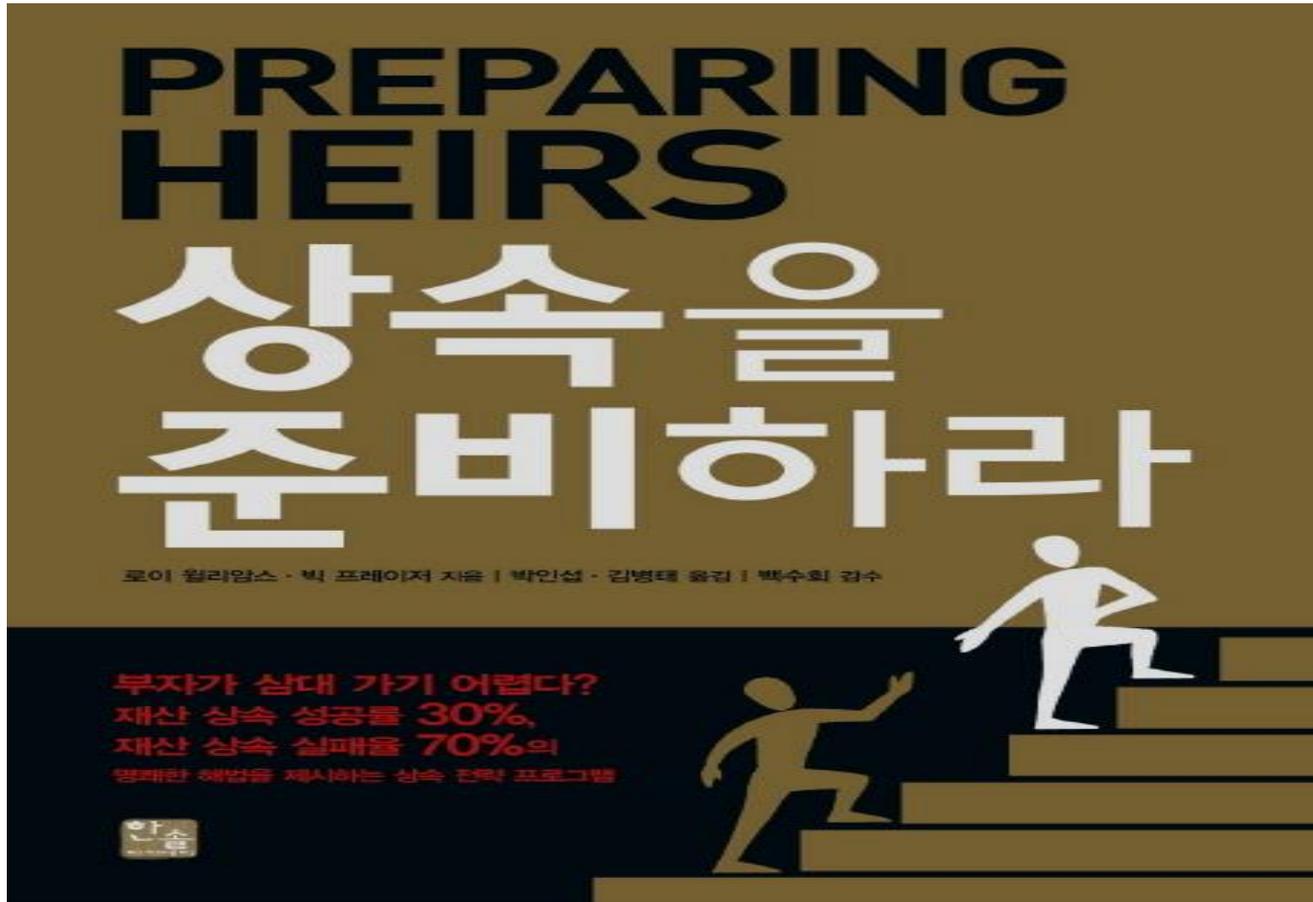
기준시가로 평가되었다면 현금 보다는 부동산이 유리

향후 재산가치가 큰 것부터 증여하세요

세금이 있건 없건 신고 하세요.



이런 편법 말구요.



우린 일찍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우회계법인 상무/공인회계사 박경연

cpakypark@hanmail.net

042-862-3020 / 010-3343-7993

**Come together,
Create Value through**